

『한국성광학보』 편집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성광학회의 학회지인 『한국성광학보』(이하 학회지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성광학회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2/3의 찬성으로 제정되고 개정된다.

제3조 (학회지의 구성) 학회지는 다음과 같이 한국성광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조사보고(중요유적 소개, 연구노트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4조 (인쇄 및 발행) 학회지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3월 20일, 9월 20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3월 25일, 9월 25일로 한다.

제5조 (투고 제한) 학회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비회원의 투고도 가능하나,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② 편집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고, 과반의 출석으로 성회한다.
- ④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며, 편집위원회 업무를 추진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학보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 의결사항)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 ②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 ③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회지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 (논문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②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④ 원고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9조 (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에 따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게재: AAA, AAB

수정 후 게재: ABB, BBB, AAC, ABC, BBC

수정 후 재심사: ACC, ACD, BCD, CCC

게재불가: ADD, BCD, BDD, CCD, CDD, DDD

기타: AAD, ABD, BBD 의 경우는 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하여 결정함.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 ⑥ 재심사 논문은 다음 호 심사를 진행한다. 단 재심사 논문이 다음 호에 제출되지 않았을 때는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제10조 (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1.5개월 전까지로 한다.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0.5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논문에는 저자의 영문이름과 소속 및 지위 등을 명시한다.
- ④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

제11조(게재료 청구) 학회는 투고 논문의 게재가 결정되면 투고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한다. 단 이 조항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지가 된 이후에 적용한다.

제12조(지적재산권) 학회지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성곽학보』 원고작성기준

1. 논문은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의 순으로 구성한다.
2. 투고 희망자는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된 논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3. 원고분량은 연구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조사보고는 100매 내외로 한다.
4.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본문에서는 한문이나 구미 어문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필요한 경우 각주에 달기로 한다.
5. 장 제목은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I, II, III...)로, 절 제목은 1, 2, 3의 형식으로, 항 제목은 1), 2), 3)의 형식으로 원칙으로 한다.
6. 주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 서명: 『 』, 논문명: 「 」, 작품: < >
 - 학술 용어, 인명, 지명 등의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각 장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에 한하여 국문 용어 또는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안에 표기한다.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정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예) 산나이마루야마(山内丸山)
 - 연대표기는 서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괄호를 하여 왕대를 부기한다. ○○○○년(○○○)
7.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한 쪽수를 밝힐 수 있다. 유적명을 열거하는 경우의 근거 보고서는 가능한 한 인용을 생략한다.
 - ① 단독연구: (홍길동 2010) (홍길동 2010: 213) (홍길동 2010: 213~215) (James 1999: 216) (홍길동 2010a, 2010b)
 - ② 2인 공동 연구: (이몽룡·성춘향 2010) (이몽룡·성춘향 2010: 11) (이몽룡·성춘향 2010: 11~15) (James & Smith 2010: 278)
 - ③ 3인 이상 공동 연구: (홍길동 외 2010) (홍길동 외 2010: 213) (홍길동 외 2010: 213~215) (James, et al 1999: 216)

- ④ 두 연구 이상: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의 순으로 저자를 나열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한국어는 한글 자모순, 중국어, 일본어는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한다.
8. 본문 안에서 인용문헌 표시 이외에 사료를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쓰고, 원문을 밝혀야 할 때는 각주에 단다.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가능한 한 간략히 기술한다.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본문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
9.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한다.
 - 참고문헌의 표기는 단행본의 경우 저자, 연도, 『책명』, 출판사(기관)의 순서로 하고, 논문의 경우 저자, 연도, 「논문명」, 『책명』 호수, 학회(기관)명 순서로 한다.
 -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하되, 논문과 저서 구별없이 한국어는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 일본어는 저자명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순으로 한다. 또한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제목의 한글 자모순이나 알파벳순으로 1998a, 1998b 등으로 구분한다.
 - 서양어 단행본과 학술잡지의 경우 이탤릭체를 원칙으로 한다.
10. 표, 도면, 지도, 사진
- 표는 <표 1>로 표시한다.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목은 표 상단에 표기한다. 출전은 제목 뒤 괄호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 도면, 지도, 사진 등은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본문 중이나 참고문헌 뒤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기한다. 출전은 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인용한 그림은 별도의 파일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필자의 소속과 직책은 논문 첫 쪽 각주 칸에 표기하며, 사사표기는 그 아랫줄에 밝힌다.
12. 이 방침은 창간호부터 시행한다.